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193호)

심 사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26. 고 성 군 수

2. 개정사유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제8014호 2006. 9. 27, 시행 2007. 9. 28)됨에 따라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하수처리구역 범위를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200m 이내로 지정(안 제2조)
- 나. 침수·장미 등 재해발생 방지 및 하수도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하수관거 청소·준설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안 제5조)
- 다.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관리·용도제한·수질검사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 제10조)
- 라.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 마.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있어 오수 오수발생량 산정 및 m^3 /일당 부담금 산정방식을 단순화함(안 제19조)
- 바. 분뇨수집 m^3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금액을 정함(안 제24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9-620호(2009. 7. 14)
- 의견제출 사항

나. 관계법령 및 근거

- 하수도법 제15조·제26조·제27조·제41조·제61조·제65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제35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제9조
- 지하수법 제7조·제8조
- 건축법 제22조
- 지방세법 제27조
-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제38조의2

다. 관련부서 합의됨 :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환경과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06. 9. 27 개정, '07. 9. 28 시행)됨에 따라 '04. 1. 8일 제정된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를 전부 개정하되, '93. 11. 18일 제정되어 '02. 1. 7일 까지 7회에 걸쳐 개정 시행하던 「고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 고성군이 '09. 7. 14일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4개월 이상을 경과한 이번 2차 정례회에 동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한데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하수도 조례 개정안에 대한 환경부 표준안은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공공하수도(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고 있는데 비해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제2조에서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를 지정기준으로 하는 사유, 하수관거 청소 준설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문 : 금년 7월 14일 입법 예고하고 지금 조례안이 넘어오는 특별한

이유는?

- ◎ 답 : 전부개정 조례안이다 보니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 문 : 분뇨 수집운반 업체가 없다고 하던데 있습니까?
- ◎ 답 : 예, 고성에 있습니다.
- 문 : 정화조가 차서 불러도 기름값이 비싸고 수지가 맞지 않아 잘 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종종 있는데, 제재를 하던지 행정에서 요금을 현실화 하던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 답 : 잘 알겠습니다.
- 문 : 고성군 하수도조례안 제2조에서 정부 표준안과 달리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300m로 하지 않고 200m로 하는 사유와 청소 준설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사유는?
- ◎ 답 : 지형지물도 200m를 벗어나서 될 수도 있고, 어차피 군민을 위해 행정을 하기 때문에 벗어나도 조건만 되면 다 흡수하도록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발달하다보니 고깃집 같은 경우 기름이 굳어지는 등 2년으로는 좀 무리가 있어 청소 준설 기간이 부족하므로 1년으로 단축하자는 것입니다.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 2009. 12.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